

〈일반논문〉

6~7세기 고구려 中裏制의 운영과 人事*

이 규 호 **

〈목차〉

- I. 머리말
- II. 중리제의 구조와 직무분담
- III. 후기 중리관제의 성립과정과 운영방식의 특징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고구려 流民 묘지명 등에 보이는 中裏官制에 주목하여 6~7세기 中裏制의 구조와 운영을 밝히고, 그것이 관리 인사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6~7세기 고구려 중리관제는 조직면에서 두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는 官等形 中裏官으로, 당시 고구려 관제 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던 兄系 관등에 결합하여 중리관 사이의 서열을 드러내는 관등적 속성을 갖고 있었다. 관등형 중리관은 구체적 임무가 부여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왕명 출납이나 왕실 재정 관리 등 近侍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으며, 왕과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外官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둘째는 官職形 中裏官으로서, 이들은 侍衛軍을 구성하였다. 이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111775). 또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高句麗 官制 研究』의 4장 3절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역시 관등형 증리관의 서열에 맞추어 상하관계를 이룬 무관직이었는데, 位頭大兄 이하 小兄에 이르기까지 총 3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고구려 증리관제는 6세기 중엽에 일어난 양원왕의 왕위계승분쟁을 계기로 개편된 것이었다. 기왕의 증리관제였던 中裏都督府는 평양 천도의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그 지역에 안치된 漢人 유이민의 통치와 등용을 위한 조직으로서의 성격이 있었다. 따라서 왕실 사무 및 근시 등을 관장하는데 있어 조직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양원왕 등은 장안성 축조를 계획하면서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조직적으로도 근시에 보다 충실한 인적집단을 구상하였고, 그것이 현전하는 증리관제의 설립배경이었다고 이해하였다.

타국의 사례들과 비교하면, 이 시기 고구려 증리관은 근시조직이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리의 등용을 위한 조직으로서도 기능했다고 보았다. 귀족 자체들은 증리관을 통하여 예비관료군이 되었고, 능력과 상황에 따라 내외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고구려왕은 증리관 출신자를 통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보다 확대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증리관의 수장인 莫離支는 왕명출납, 병력동원, 인사 등의 막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았다.

□ 주제어

高句麗, 中裏制, 莫離支, 侍衛軍, 近侍

I. 머리말

증리란 신라의 裏內, 일본의 內裏와 같은 의미로서 군주가 거처하는 공간을 가리킨다. 증리제는 그와 관련된 제도로, 구체적으로는 군주에 近

侍하며 그에 필요한 다양한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¹⁾ 이처럼 전근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근시제도는 內朝라고도 불리며 군주가 생활하는 공간, 거기에 상주하며 정치행위를 보좌하는 신료집단, 그들이 소속된 정치기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²⁾ 이는 중앙과 지방행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조직인 外朝와 대응된다.

고구려와 인접한 중원왕조에서는 내조가 관제발달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중앙관제의 핵심조직으로서 3省으로도 통칭되는 尙書, 中書, 門下는 본래 내조였지만 漢~魏晉 시대를 거쳐 외조로 전환되었으며, 唐 후반기에는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내조로서 文翰기구였던 翰林院이 등장했다.³⁾ 내조의 속성이 본래 군주의 사적 욕구에 기반하였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는 군주의 권력이 국가통치조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던 사실을 잘 보여준다.

중원왕조의 사례에 비추어보면 한국 고대 삼국에서도 그와 비슷한 조직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백제와 신라는 현전하는 기록에서 구체적인 조직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신라의 경우 3권의 『삼국사기』 직관지 가운데 한 권을 통째로 內省의 소개에 할당하고 있는데, 각 부서의 명칭과 속관까지 상세히 전하고 있다.⁴⁾ 백제의 경우 사비기 국정을 담당할 관청으로 22部司가 전하는데, 왕실과 관련된 부서로 內官 12部가 있어 外官 10部보다도 많았다.⁵⁾ 이처럼 양국 통치조직 가운데 왕실 관련 관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은 중원왕조와 마찬가지로

1) 武田幸男, 「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體制」,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4, 學生社, 1980, 56~57쪽.

2) 이문기, 「한국 고대국가의 內朝연구 序說」, 『안동사학』 9·10, 2005, 28쪽.

3) 이성규, 「중국 고대 황제권의 성격」, 『東亞史上의 王權』, 한울아카데미, 1993, 24~27쪽.

4) 『삼국사기』 권39, 職官 中, 內省.

5) 『주서』 권 49, 百濟; 『북사』 권 94, 百濟; 『한원』 蕃夷部, 百濟.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군주들의 지향점이 잘 드러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타국의 사례들로 보아 고구려의 中裏制 역시 왕권의 추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중리에 관해서는 일찍이 국왕의 측근으로 이해하거나,⁶⁾ 中裏府를 상정한⁷⁾ 연구들이 있었지만 모두 단편적인 지적에 그쳤다. 중리를 근시조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견해를 낸 것은 武田幸男으로, 그에 의하면 중리는 禁中을 의미하며 중리관제는 국왕 직속 관료군으로서 그의 私的 家政機關에서 유래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중리제는 公的 國政機關인 大對廬 등과 대비되어 왕권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⁸⁾

그러나 관련 기록이 매우 영세하여 하나의 제도로서 중리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피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단적으로 5세기 초반 조영된 덕흥리벽화고분에 보이는 中裏都督은 당시 중리조직의 수장으로 거론되지만,⁹⁾ 그 이름만 전할 뿐이라 추가적인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중리제에 관한 진전된 논의가 가능한 것은 6세기 중엽 이후이다. 이 시기의 주된 자료는 유민묘지명으로서, 개별 명칭 뿐 아니라 승진 과정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운영양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할 뿐 아니라, 묘지명의 추가 발견에 따른 사료의 확보까지 기대할 수 있다. 본고에서 6~7세기 중리제로 기간을 한정할 것도 이러한 이유에 의한 바가 크다.

6) 김철준, 「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 『李丙燾博士華甲記念論叢』, 1956 : 『한국고대사회연구』, 지식산업사, 1975, 154쪽.

7) 노중국, 「高句麗 律令에 관한 一試論」, 『동방학지』 21, 1979, 139~140쪽.

8) 武田幸男, 「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體制」, 1980, 56~57쪽.

9) 관련 연구로는 이문기, 「高句麗 德興里古墳壁畫의 ‘七寶行事圖’와 墨書銘」, 『역사교육논집』 25, 1999; 이규호, 「4~5세기 고구려 中裏都督府의 성립과 기능」, 『고구려발해연구』 53, 2015.

앞서 소개한 연구에 이어서, 6~7세기 중리제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이 문기에 의해 진행되었다. 먼저 종래 후기 관등제에서 2위 태대형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었던 막리지의 실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는 『천남산묘지명』에 보이는 ‘中裏之顯位’라는 표현이 형제인 『천남생묘지명』에서는 막리지에 대응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에 막리지를 당시 중리제 가운데 최고위인 中裏太大兄으로 파악하는 한편, 그것이 6세기 후반 평원왕대에 성립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보았다.¹⁰⁾ 이후 중리제 전반에 대한 흐름을 살피면서 6~7세기 중리조직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구체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당시 중리제는 中裏冠稱官等과 中裏冠稱官職으로 구분되어 각각 近侍와 侍衛를 맡았던 것으로 이해하였다.¹¹⁾

이후 한동안 다시 침체를 맞다가 근래 발견된 『高乙德 墓誌銘』로 인해 중리제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¹²⁾ 3대에 걸친 묘주 가문의 관력에 中裏가 등장하는 한편, 그것을 바탕으로 수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冏事, 즉 왕실 牧馬와 관련된 직무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고구려 왕실 사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의 발견이었다. 이를 계기로 6~7세기 중리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

10) 이문기, 「高句麗 莫離支의 官制의 性格과 機能」, 『백산학보』 55, 2000.

11) 이문기, 「高句麗 中裏制의 構造와 그 變化」, 『대구사학』 71, 2003.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중리제가 국왕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중리직을 역임한 귀족들이 여타 귀족들을 견제하며 세력기반을 강화하는 용도로도 활용되었다고 본 견해가 있다(김영심, 「遺民墓誌로 본 고구려 백제의 官制」, 『한국고대사연구』 75, 2014, 179~182쪽).

12) 王連龍, 「唐代高麗移民高乙德墓誌及相關問題研究」, 『吉林師範大學學報』 2015-4, 2015. 묘지명의 역주는 葛繼勇, 「신출토 入唐 고구려인 〈高乙德墓誌〉와 고구려 말기의 내정 및 외교」, 『한국고대사연구』 79, 2015; 정동준, 「高乙德 墓誌銘」, 『목간과문자』 17, 2016; 이성제, 「어느 고구려 무장의 가계와 일대기」, 『중국고중세사연구』 38, 2018을 참조.

먼저 형제 관등과 결합한 중리계 관등을 설정하고 귀족 가문의 권력계승 방식으로서 중리제가 활용되었음을 지적한 연구가 제출되었다.¹³⁾ 논자는 이전에도 이러한 견해를 피력한 바 있었지만,¹⁴⁾ 새로운 자료를 통해 논지를 보강한 것이었다. 그에 의하면 중리관제는 관등제와 결합한 별도의 체계로서 고위 귀족 가문의 권력을 승습할 자제에게 주어지는 특별 승진경로이고, 그들이 중리관제를 매개로 하여 근시업무에 참여했던 것이라 파악한다. 중리를 소지한 것이 바로 근시업무와 직결된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귀족 가문의 官路에 있어서 왕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중리관제이며, 자신의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발탁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¹⁵⁾ 6세기 이후 고구려에는 任子 제도를 통한 관인의 수급 방식이 있었고, 귀족들은 이를 통하여 관료의 길로 나아갔는데, 왕과 귀족 가문 간의 밀착 관계가 그 기반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고을덕 가문이 대대로 맡았던 왕실 牧馬 사무 때문이고, 그에 관한 가문의 특별한 능력이 왕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해주었다고 보았다. 이 견해는 중리제에 대해 근시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관리등용 방식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제한된 사료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내어 중리제에 대한 시야를 조금씩 넓힐 수 있게 해주었다. 본고에서는 새로운 자료의 발견으로 인하여 중리제의 이해가 깊어진 만큼, 기왕의 논의에

13) 여호규, 「新發見 〈高乙德墓誌銘〉을 통해 본 高句麗 末期의 中裏制와 中央官制」, 『백제문화』 54, 2016. 중리계 관등의 등장배경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장안성 축조 공사로 인한 왕실과 국정운영 중심지의 분리와 그에 따른 왕실 사적업무의 독립성 증대를 들기도 한다(강진원, 「고구려 평양도읍기 王城의 추이와 왕권」, 『한국고대사연구』 101, 2021, 221~224쪽).

14) 여호규,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2014, 411~417쪽.

15) 이성재, 「遺民 墓誌를 통해 본 高句麗의 中裏小兄」, 『중국고중세사연구』 42, 2016.

서 쟁점이 되었던 내용들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보다 진전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첫째, 당시 고구려 중리제의 기본적인 형태를 재정리한다. 이 시기 중리제의 구조를 중리관칭관등과 중리관칭관직으로 분리하여 파악한 견해가 제시된 이래, 그 이후의 연구들은 주로 전자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새로 발견된 자료가 남긴 정보의 한계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도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다. 본문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전자는 위두대형 이상의 ㅍ에도 결합한 반면, 후자는 대형에서 그치고 있다. 양자 간의 위상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왕의 호위라는 직무가 매우 중요한 일이었음을 생각하면, 일정한 균형이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관리의 등용과 인사라는 측면에서 중리제를 접근할 것이다. 고구려가 존속했던 시기는 과거제를 운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가조직이 발달하고 운영되었다는 것은 별도의 관리등용방식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다뤘던 漢代 郎官제도의 사례가 참조된다. 이들은 예비관료군을 천거 등의 방식을 통해 근시관에 보임된 다음, 각종 관부에 給事하였다. 그렇다면 근시조직이 단순히 군주를 보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 통치를 위한 관리 수급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중리제와 유사한 운영양상이 보이는 사례들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관련 자료 자체가 적기 때문에 대상을 고구려로 한정하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유사한 사례를 통해 보완할 수밖에 없다. 타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고구려 중리제의 운영에 대한 단서를 찾길 기대한다.

II. 증리제의 구조와 직무분담

1. 관등형 증리관의 구성과 근시업무

선행연구에서 지적했듯 6세기 이후 증리제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증리+형계관등(이하 관등형 증리관)이고, 둘째는 증리+무관직(이하 관직형 증리관)이다. 먼저 상대적으로 사례가 많은 전자의 경우 부터 살펴본다.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1. 泉男生의 字는 元德이고 高麗 蓋蘇文의 아들이다. 9세에 父任으로 先人이 되었다. 中裏小兄으로 승진하였는데 唐의 謁者와 같다. 또 中裏大兄이 되었는데 국정을 주관하고 辭令을 맡는 것은 모두 남생이 주관하였다. 中裏位頭大兄으로 나아갔다. 오래지 않아 莫離支가 되고 三軍大將軍을 겸하였으며, 大莫離支를 더하여 나가서 諸部를 按撫하였다.¹⁶⁾

가-2. 曾祖 子遊와 祖父 太祚는 모두 莫離支에 임명되었고, 父親 蓋金은 太對廬에 임명되었다. 祖父와 父親은 가업을 잘 계승하여[良冶良弓] 모두 兵權[兵鈐]을 잡았으며, 나라의 권세[國柄]를 모두 차지하였다 ... 나이가 9세에(642) 이르자 곧 先人을 받았다. 父任으로 郎이 되니 바로 入榛의 辯을 드러냈고, 하늘의 재주를 대신하여 바야흐로 結艾의

16) 『신당서』 권110, 列傳 35 諸夷蕃將, 泉男生, “泉男生字元德, 高麗蓋蘇文子也. 九歲, 以父任爲先人. 遷中裏小兄, 猶唐謁者也. 又爲中裏大兄, 知國政, 凡辭令, 皆男生主之. 進中裏位頭大兄. 久之, 爲莫離支, 兼三軍大將軍, 加大莫離支, 出按諸部.”

영화에 올랐다. 15세에(648) 中裏小兄을 받았고 18세에(651) 中裏大兄을 받았다. 23세에(656) 다시 中裏位頭大兄에 임명되었고 24세에(657) 장군을 겸하여 받았는데 나머지 官은 전과 같았다. 28세에(661) 莫離支에 임명되었고 三軍大將軍을 겸해 받았으며, 32세에(665) 太莫離支를 더하여 軍國을 총괄하는 阿衡元首가 되었다.¹⁷⁾

가-3. 조부 峇은 건무대왕에게 中裏小兄을 받고 冏事를 주관하였다. 견책으로 인하여 冏事에서 쫓겨나 外官으로 내려갔다. 여러 자리를 옮겨 다니다가 승진하여 遼府都督을 받았다. 곧 教를 받들어 對盧官을 따라 받았고 예전에 의거하여 冏事를 주관하였으며 評臺의 職에 임하였다. … 아버지 孚는 보장왕에게 中裏小兄을 받고 南蘇道史에 임명되었다. 大兄으로 승진하여 海谷府都督에 임명되었다. 또 승진하여 太相을 받고 司府大夫에 임명되어, 冏事の 주관을 承襲하였다. … 공의 나이 겨우 立志[30세]일 때 그 나라에 출사하였는데, 官은 中裏小兄을 받고 貴端道史에 임명되었다.¹⁸⁾

위의 사료에는 천남생, 고을덕 가문의 3대(高岑, 高孚, 高乙德) 총 네 명의 인물이 관등형 중리관을 역임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외형적으

17) 『천남생묘지명』, “曾祖子遊 祖太祚 並任莫離支 父蓋金 任太大對盧. 乃祖乃父 良治良弓 並執兵鈴 咸專國柄…年始九歲, 卽授先人. 父任爲郎, 正吐入榛之辯, 天工其代, 方昇結艾之榮. 年十五授中裏小兄, 十八授中裏大兄. 年廿三改任中裏位頭大兄, 廿四兼授將軍, 餘官如故. 廿八任莫離支, 兼授三軍大將軍, 卅二加太莫離支, 揚錄軍國, 阿衡元首.”

18) 『고을덕묘지명』, “祖岑, 受建武太王中裏小兄, 執冏事. 緣教責, 追冏事, 降黜外官. 轉任經歷數政, 遷受遼府都督. 卽奉教, 追受對盧官, 依舊執冏事, 任評臺之職. … 父孚受寶藏王中裏小兄, 任南蘇道使, 遷陟大兄, 任海谷府都督, 又遷受太相, 任司府大夫, 承襲執冏事. … 公年纔立志仕彼邦, 官受中裏小兄, 任貴端道史.”

로 관등형 중리관은 형계 관등에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주지하듯 고구려 관등제는 3세기 중후반 무렵부터 兄과 使者가 大小로 분화하기 시작했고, 두 계통은 교차하여 서열을 이루었다. 그런 점에서 관등형 중리관이 형계 관등에만 결합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우선 이 시기 관등제를 가장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한원』에서 형계 관등이 특정 관직 임명에 필요한 조건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에서는 소형 이상이 國子博士·大學士·舍人通事·典客에, 대형 이상이 末若에, 위두대형 이상이 대모달에 임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¹⁹⁾ 이는 당시 고구려 관등제에서 각각의 형계 관등을 하한으로 계층이 구분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므로, 관등형 중리관 역시 이러한 기준에 맞춰 설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관등형 중리관에서 최하위의 諸兄과 최상위의 太大兄이 보이지 않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諸兄은 형계 관등과 결합하는 양상을 통해 중리제형이 있었을 것이라 보기도 한다.²⁰⁾ 그러나 남생이 최하위인 선인부터 단계별로 승진했음에도 제형은 빠져있는 점, 6~7세기 관제구조에서 제형을 기준으로 삼는 구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으로 보아 중리제형의 존재는 긍정하기 어렵다.

태대형의 경우 막리지와의 관계가 함께 고려된다. 종래 태대형과 막리지는 동일하게 2품으로 기록되어 있고, 태대형의 이칭이 莫何何羅支라는 것에 근거하여 서로 같은 실체를 달리 부른 것이라 이해해왔다.²¹⁾ 그

19) 『한원』, 蕃夷部, 고려, “又有國子博士·太學博士·通事舍人·典客, 皆以小兄以上爲之…其武官曰大模達, 比衛將軍, 一名莫何邏繡支, 一名大幢主, 以早衣頭大兄以上爲之. 次末若, 比中郎將, 一名郡頭, 以大兄以上爲之.”

20) 이문기, 「高句麗 中裏制의 構造와 그 變化」, 2003, 38~39쪽.

21) 武田幸男, 「高句麗官位制의 史的展開」,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1989, 379~386쪽.

런데 이 설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막리지를 中裏太大兄으로 비정하기도 한다.²²⁾ 그에 의하면 남생과 남산 형제의 묘지명에는 증조인 子遊의 최종 관력을 각각 막리지와 中裏之顯位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막리지가 중리와 관련이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2품으로 설명되는 막리지의 지위, 막리지가 된 연개소문을 일본에서 內臣으로 파악하고 있던 것,²³⁾ 형제가 중리를 통하여 승진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태대형에 해당하는 중리관은 막리지이며, 중리태대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도 중리태대형이 막리지와 관련이 있다고 파악한 견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다만 중리태대형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다면 그 성격은 일차적으로는 관등이었을 것이다. 반면에 막리지는 唐人의 시각이지만 중서령, 병부상서, 이부상서 등 관직으로 이해되고 있었다.²⁴⁾ 또한 남생이 당에 투항했을 때, 당 조정은 그들에게 상대적으로 익숙한 막리지가 아니라 태대형을 제수하고 있다.²⁵⁾ 이러한 점은 막리지와 태대형이 구별되어 인식되었음을 보여주므로, 중리태대형의 실체를 긍정하더라도 관직으로서 막리지와는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2품 중리태대형 대신 막리지로 기록된 것은 당시 그것이 지닌 정치적 위상과 더불어, 태대형이 임명되는 관직은 막리지뿐이었기 때문일 것이다.²⁶⁾

22) 이문기, 「高句麗 莫離支의 官制의 性格과 機能」, 2000.

23) 『일본서기』권26, 齊明天皇 6년 7월.

24) 『구당서』권199 上, 고려, “自立爲莫離支, 猶中國兵部尙書兼中書令職也”; 『신당서』권219, 고려, “自爲莫離支專國, 猶唐兵部尙書·中書令職云”; 『자치통감』권196, 貞觀 16년 11월, “丁巳, 其官如中國吏部兼兵部尙書也”

25) 『천남생묘지명』. “公又遣子獻誠入朝. 帝有嘉焉, 遙拜公特進, 太大兄如故, 平壤道行軍大總管兼使持節按撫大使.” 막리지가 태대형보다 익숙했을 것이라 판단한 이유는 같은 2품으로 기록된 관이라 할지라도 태대형은 고구려 관제를 설명하는 데만 그친 데 반해, 막리지는 연개소문의 정변 이후 고구려 국내 정세와 밀접하게 관련된 지위였기 때문이다.

26) 이규호, 「고구려 對盧의 성격과 역할」, 『사학연구』 127, 2017, 165쪽.

요컨대 관등형 중리관은 형계 관등의 서열을 그대로 반영하여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관등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가-1~3 사료의 관력에서 관등형 중리관은 일반 형계 관등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면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관등형 중리관은 1차적으로 관등의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리계 관등이라는 별도의 체계가 귀족 가문의 권력을 승습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던 것이다.²⁷⁾ 반면 관등형 중리관은 해당 관등을 가진 자가 근시직을 맡을 때 받는 것으로서, 중리'직'으로 이해하기도 했다.²⁸⁾ 아래에서는 이러한 견해들을 검토하면서 관등형 중리관의 특징과 성격을 살펴보겠다.

먼저 이 시기 고구려 관직이나 관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으나, 관등형 중리관은 담당직무가 있었다. 가-2의 천남생 묘지명에 의하면 그가 중리소형, 중리대형일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가-1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어 보완할 수 있다. 가-1~3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① 男生 : 선인/郎 - 중리소형/謁者 - 중리대형/知國政, 凡辭令 - 중리위 두대형/將軍 - 막리지/三軍大將軍
- ② 高岑 : 중리소형/垆事 - 轉任經歷數政 - [位頭大兄?]/遼府都督 - 對盧/垆事, 評臺之職
- ③ 高孚 : 중리소형/南蘇道史 - 대형/海谷府都督 - 太相/司府大夫, 垆事
- ④ 高乙德 : 중리소형/貴端道史

위에 나타난 관등형 중리관의 직무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27) 여호규, 「新發見〈高乙德墓誌銘〉을 통해 본 高句麗 末期의 中裏制와 中央官制」, 2016.

28) 이문기, 「高句麗 中裏制의 構造와 그 變化」, 2003.

왕실사무로서 謁者, 凡辭令, 冏事가 해당한다. 각각의 직무에 관해서는 이전의 연구들에서도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 먼저 알자는 증원왕조에 보이는 관직으로, 漢代에는 특정한 직능을 가지지 않은 채 맡은 바에 따라 근시하였으며 남북조시대에도 빈객 접대, 사자 임무 등을 담당한 근시직이었다.²⁹⁾ 그러므로 증리소형은 왕에 근시하여 각종 제반 업무를 담당하면서 외교사절과 관련된 일에도 관여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凡辭令은 구체적인 관직명은 아니지만, 그 의미로 보아 왕명 출납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³⁰⁾ 왕명의 출납은 구두 전달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서를 매개로 진행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증원왕조에서는 황제에게 들어가는 문서를 관리하는 직책이 권력의 핵심이었다. 예를 들어 漢代에는 황제에게 드나드는 문서를 관장했던 尙書가 권력을 장악했다.³¹⁾ 따라서 군주에게 오고가는 명령을 전달하는 자는 권력과 밀접했을 가능성이 높는데, 남생의 경우에도 凡辭令 앞에 知國政했다고 하여 국정전반을 주관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물론 대형이라는 지위와 당시 18세에 불과했던 남생의 연령을 고려하면 과장된 측면도 있겠으나, 왕에게 오가는 문서를 주관한 직무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비록 두 종류에 불과하지만 이들 직무는 항상 왕에 근시하며 국정운영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같은 계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왕의 국정을 보좌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를 제외한 왕의 생활 및 왕실사무와 관련된 직무도 필요했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冏事이다. 冏事는 그

29) 이문기, 「高句麗 中裏制의 構造와 그 變化」, 2003, 26~27쪽.

30) 이문기, 「高句麗 中裏制의 構造와 그 變化」, 2003, 29쪽.

31) 漢代 상서의 역할과 권력관계에 대해서는 김택민, 「前漢代의 尙書와 領·平尙書事」, 『중국고중세사연구』 11, 2004; 「後漢의 尙書와 外戚·宦官」, 『중국고중세사연구』 21, 2009를 참조.

의미가 牧馬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³²⁾ 백제나 신라에서도 그와 관련된 관부는 왕실 사무를 담당하는 內官³³⁾ 과 內省³⁴⁾ 에 각각 소속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례는 하나에 불과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짐작하건대 백제, 신라와 같이 목마 이외에 다른 관서도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담당자는 관등형 중리관을 소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점에서 관등형 중리관이 왕실사무와 관련된 일을 맡았다고 보는 이해는 타당한 면이 있다. 하지만 관등형 중리관의 수여가 곧바로 왕실사무의 임무를 맡았음을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도 보인다. ②~④는 동일 가문 인물들의 관력인데, 이 가문은 대를 이어 왕실사무의 하나인 塡事(牧馬)를 담당하였지만 遼府都督, 南蘇道使 등 지방관에도 임명되면서 塡事와 떨어져 있기도 했다. 또 반대로 對盧, 太相과 같이 일반 관등을 소지한 채로 왕실사무인 塡事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관등형 중리관의 역할이 왕실사무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 점에서 관등형 중리관을 곧바로 근시직과 연결시키지 않고 귀족가문의 권력을 승습하는 자에게 수여하는 기준으로 설정한 견해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이 견해에서는 『천남산 묘지명』의 ‘中裏之顯位’라는 표현을 통해 중리계 관등이 일반 관등보다 지위가 높다고 보면서, 남생과 남산 형제 가운데 형인 남생만이 중리계 관등으로 승진하였으므로 중리계 관등이 가문의 권력을 승습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지위였다고 이해한다.³⁵⁾

32) 葛繼勇, 「신출토 入唐 고구려인 <高乙德墓誌>와 고구려 말기의 내정 및 외교, 2015: 이성제, 「어느 고구려 무장의 가계와 일대기」, 2015.

33) 『주서』 권49, 異域 上, 百濟. “內官有前內部·穀部·肉部·內掠部·外掠部·馬部·刀部·功德部·藥部·木部·法部·後官部.”

34) 『삼국사기』 권39, 職官 中, 內省. “供奉乘師”

35) 여호규, 「新發見 <高乙德墓誌銘>을 통해 본 高句麗 末期의 中裏制와 中央官制」, 2016, 261~262쪽.

하지만 ‘中裏之顯位’는 남생과 남산 묘지명을 비교하면 역시 막리지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편이 타당하며, 귀족의 권력 승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형제임이 확실한 것은 남생과 남산 뿐이다. 이를 통해 다른 묘지명의 가계에서 중리계 관등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장자 계승이 아니었기 때문이라 파악하는 것은 추정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남산의 경우도 관등형 중리관과 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자료의 축적을 기다린 뒤에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관등형 중리관이 별도의 조직체라면, ‘중리’의 의미를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는 왕실사무와 관련되었음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런데 고을덕 가문의 관력을 보면 관등형 중리관은 왕실사무를 넘어서는 관직에까지 임명되고 있을 뿐 아니라, 對廬와 太相 같은 일반 관등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왕실사무(塲事)를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고을덕 가문의 牧馬 능력을 바탕으로 한 왕실과의 사적인 관계 속에서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³⁶⁾ 제도적으로도 중리계 관등이 내외관직에 임명되거나 일반 관등이 왕실사무를 담당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관등형 중리관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시조직은 물론이고 후기 관등제의 전체적인 운영 속에서 그것이 가지는 역할과 의미를 찾아야한다. 이 점에서 父任에 의해 임명된 先인이 중국의 郎과 같다고 기술된 것에 주목하여 고구려에서 任子 제도의 운영을 지적인 견해는³⁷⁾ 중요하다. 그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漢代는 郎에서 謁者が 선임되었으며 알자는 황제의 신임을 받는 자리였다. 또한 郎은 察舉 등으로 발탁된 관리가 처음으로 보임되는 예비관료군 성격의 관직으로서 황제의 근시

36) 이성제, 「遺民 墓誌를 통해 본 高句麗의 中裏小兄」, 2016, 444~445쪽.

37) 이성제, 「遺民 墓誌를 통해 본 高句麗의 中裏小兄」, 2016, 441쪽.

직이었고, 때가 되면 중앙관부에 給事하거나 지방장관에 임명되었다.³⁸⁾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郎과 같은 성격을 지닌 선인에서 승진한 중리 소형이 근시업무를 맡는다거나, 지방관으로서 파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과거제를 통해 관리를 선발하지 않았던 이 시기에는 타인에 의한 추천이나 가문의 배경에 의한 선발이 주된 관리등용 방식이었기 때문이다.³⁹⁾ 따라서 고구려에서도 漢代의 郎官과 같은 제도가 운영되었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관인이 군주에 근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郎은 선인에 부기된 설명이었으므로, 근시의 직무는 중리관이 아니라 선인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시기 고구려 관제의 운영은 예비관료군으로서 선인에 제수되어 근시하다가, 중리관을 받고 근시업무를 지속하거나 일반관등을 받고 중앙과 지방관직에 임명되어 맡은 바를 수행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일반관등과 구별되는 관등형 중리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왕과의 관계가 일차적으로 고려되었던 것 같다. 고을덕 가문이 관등형 중리관을 받음에 왕호를 특기하였던 이유였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귀족가문의 위상이나 영향력에 따라 승진의 한계도 결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진남북조 시대에 가문의 격에 따라 초임관이나 승진경로가 달라졌던 것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이러한 추정을 보완할 구체적인 비교사례 검토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러한 구분이 있었을 것 정도만 지적해둔다.

정리하자면 관등형 중리관은 일반 관등 체계와 구별되는 별도의 승진 경로로서, 기본적으로는 왕실사무를 담당하는 근시관제였다. 왕실사무에

38) 嚴耕望, 『秦漢郎吏制度考』, 『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23上, 1951.

39) 漢代의 인재등용방식은 권혁윤, 『漢代 官吏登用制度和 尙書의 關係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에 상세하다. 이후 위진남북조 시기는 宮崎市定 지음, 임대희 외 2명 옮김, 『구품관인법의 연구』, 소나무, 2002를 참조할 수 있다.

는 국정운영의 매개가 되는 문서전달을 비롯하여 왕실재정과 관련된 牧馬 업무 등 다양한 분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것은 단순히 근시집단에게 부여되는 관등에 그치지 않고, 왕의 권위를 배경으로 내외 관에도 임명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운영은 군주의 권력이 중리관 소지자를 통해서 국내에 파급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으며, 그 역시 군주의 후원 덕분에 가능했다.⁴⁰⁾

이렇듯 왕의 통치행위를 보좌하는 근시 조직의 운영을 설정할 수 있다면, 국정운영의 결정권자이자 가장 중요한 존재인 왕을 호위하는 조직도 필수적으로 운영되었을 수밖에 없다. 종래에는 이와 관련하여 중리와 결합된 관직들에 주목하여 시위조직이 있었을 것이라 보았는데,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다.

2. 관직형 중리관과 侍衛조직

관직형 중리관은 중리에 관직명을 관칭한 것으로서, 관직에 결합한 것에서 짐작되듯 구체적인 직무를 명칭 자체에서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다.⁴¹⁾

나-1. 나이가 15세에(653) 이르자 本國王의 敎로 小兒의 位가 되었고 18세에(656) 敎로 大兒의 位가 되었다. 13等の 班次에 거듭 천거되고 승진

40) 이성재, 「遺民 墓誌를 통해 본 高句麗의 中裏小兒」, 2016, 449~450쪽에서도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외관직으로 나아간 중리관의 의미를 군주와의 사적인 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보았다.

41) 선행연구에서는 관직형 중리관(해당 논문에서는 중리관칭관직으로 지칭)으로 5세기의 中裏都督이나 3세기 이전의 中畏大夫도 검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이문기, 「高句麗 中裏制의 構造와 그 變化」, 2003), 본고에서는 6세기 이후로 시기와 대상을 한정하였으므로 제외하였다.

하여 2천리의 城池를 弱冠이 안 되어 능히 다스렸다. 烏拙, 使者, 翳屬, 仙人에 이르기까지 비록 주요한 권력[機權]은 나누어 맡았으나 항상 軍權[旌騎]은 드높였다. 21세에(659) 中裏大活을 더하였고 23세에(661) 位頭大兄으로 승진하였으며 여러 차례 승진하여 中軍主活이 되었고, 30세에(668) 太大莫離支가 되었다.⁴²⁾

나-1은 남생의 동생인 남산의 묘지명의 일부로서, 그의 관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증리를 칭하고 있는 것은 中裏大活뿐이다. 위의 의하면 남산은 일반 관등을 통해 승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관등형 증리관을 통해 승진한 남생과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관등형 증리관이 귀족 가문 권력 승습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이해했던 것이다.⁴³⁾ 이에 관한 입장은 앞에서 밝혔지만, 그러한 견해에 따른다 하더라도 남산의 관력에서 증리대활이 돌출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한 면이 있다.⁴⁴⁾

일단 남산의 관등 승진 양상이 남생과 같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남생이 역임한 관등형 증리관은 형계 관등에 결합되어 있고 서열 역시 같다고 하였다. 그런데 남산의 승진은 형계 관등만을 거치고 있을 뿐 아니라, 남산이 각각의 관등에 임명되었던 당시의 연령은 남생의 그것

42) 『천남산묘지명』, “年始志學, 本國王敎小兄位, 年十八, 敎大兄位. 十三等之班次, 再學而昇, 二千里之城池, 未冠能理. 至於烏拙使者翳屬仙人, 雖則分掌機權, 固以高旌旌騎. 年廿一, 加中裏大活, 廿三遷位頭大兄, 累遷中軍主活, 卅爲太大莫離支.”

43) 여호규, 「新發見 <高乙德墓誌銘>을 통해 본 高句麗 末期의 中裏制와 中央官制」, 2016, 265쪽.

44) 해당 연구에서는 시위군을 별도로 선발했거나, 연개소문이 사적기반 강화를 위해 관례와 달리 남산에게 국왕 시위업무를 맡겼을 가능성을 상정했다(여호규, 「新發見 <高乙德墓誌銘>을 통해 본 高句麗 末期의 中裏制와 中央官制」, 2016, 265쪽의 주72).

과 똑같다. 물론 당시 그들이 가졌던 권력을 생각할 때, 고구려의 모든 관등을 차례대로 밟아나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남생과 취임연령까지 같은 승진양상은 그가 관등형 중리관을 거쳤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묘지명에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남산 역시 관등형 중리관을 받으며 승진했을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다.⁴⁵⁾

남산의 관등이 관등형 중리관이었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本國王의 敎'로서 받았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가-3의 『고을덕 묘지명』에서는 관등형 중리관을 수여한 주체로서 建武太王, 寶藏王 등 왕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이 왕과의 특별한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기술이었다고 하면,⁴⁶⁾ 나-1의 『천남산 묘지명』에서도 구체적인 왕명을 적지는 않았지만 같은 맥락으로 기술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남산은 18세에 대형이 된 뒤, 2천리의 城池를 능히 다스렸다고 하였다. 이 역시 묘지의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고구려의 국정에 관여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남생 역시 중리대형이 된 후 국정을 담당하고, 사령을 주관하였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국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미로서, 양자는 모두 같은 맥락을 전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당시 고구려에서는 제5위관인 위두대형 이상이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각종 정무를 담당하였다.⁴⁷⁾ 일반 관등으로서 남산의 대형을 바라보면 정황에 맞지 않는 현상이다. 연개소문 집권 하에 남산은 그의 아들로서 각종 특혜를 받았을 수는 있지만, 그조차도 고구려 관등제를 착실하게 밟아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면 일정한

45) 이문기, 「高句麗 莫離支의 官制의 性格과 機能」, 2000, 103쪽 : 「高句麗 中裏制의 構造와 그 變化」, 2003, 19~21쪽.

46) 이성제, 「遺民 墓誌를 통해 본 高句麗의 中裏小兄」, 2016, 440쪽.

47) 『한원』 변이부, 고려, 「高麗記曰, 其國建官有九等, 其一曰吐拵, 比一品, 舊名大對盧, 惣知國事…以前五官, 掌機密謀改[政]事, 徵發兵, 選授官爵.”

규제는 지키고 있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따라서 남산 역시 관등형 중리관을 통해 승진을 거쳤다고 판단되며, 그도 형인 남생과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근시업무에 종사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단, 남산의 근시업무는 남생과 달리 시위와 관련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단서로 보이는 것이 ‘비록 주요한 권력[機權]은 나누어 맡았으나 항상 군권[旌騎]은 드높였다’는 서술이다. 이는 남산이 일찍부터 군사와 관련된 직무를 맡았던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설명 다음에 보이는 남산의 관력은 군사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남산의 다음 관력은 中裏大活 - 위두대형 - 中軍主活 - 太大莫離支로 이어진다. 이 가운데 위두대형과 태대막리지는 각각 관등에 해당한다.⁴⁸⁾ 그리고 이 사이에 끼어있는 중리대활과 중군주활은 명칭이 ‘~活’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 유사한 성격의 관명으로 보인다. 두 관명의 성격에 대해서는 중군주활이 단서를 주는데,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중군은 군대편제 가운데 최고 지휘부가 있는 주력부대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중군주활은 여기에 포함된 군관직이라 하였다. 또한 중군주활이 임명될 당시 남산은 위두대형이었는데, 고구려에서 장군은⁴⁹⁾ 위두대형을 자격조건으로 삼았다. 따라서 중군주활은 위두대형을 자격으로 삼으며, 삼군편제 가운데 중군의 지휘관을 지칭하는 것이라 하였다.⁵⁰⁾ 이에 따른다면 主活은 장군의 고구려식 표현일 가능성도 있다.⁵¹⁾

48) 막리지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앞의 설명을 참조.

49) 『천남생 묘지명』을 비롯한 고구려의 장군 운용과 관련해서는 근래 상세히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이정빈, 「천남생묘지」에 보이는 장군과 7세기 고구려의 군사 운용, 『한국고대사탐구』 22, 2016).

50) 이문기, 「高句麗 中裏制의 構造와 그 變化」, 2003, 21~23쪽.

51) 이와 관련하여 추정에 불과하지만 軍主로도 표현된 褥薩의 薩과 主活, 大活의 活 이 비슷한 音價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쩌면 당시 고구려에서 군사 지휘

이처럼, 중군주활이 무관이라면, 비슷한 성격으로 보이는 중리대활 역시 무관이었으리라 추정된다. 특히 중리라는 표현에 주목한다면 그 임무는 시위무관일 가능성이 높다. 선행연구에서도 이 점에 주목하여 중리대활을 시위무관으로서 이해했다.⁵²⁾ 중리대활은 남산이 대형을 받은 뒤에 임명된 것으로 나오는데, 중군주활이 위두대형 이후에 받은 것과 같은 방식의 기술이다. 따라서 중리대활은 기존의 이해대로 대형이 임명되는 시위무관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시 시위군 조직이 중리대활 하나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당시 시위군의 구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중리대활의 하위관으로서 中裏小活이 있었는가의 문제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고구려는 大小의 구분을 두어 관명을 설치해왔으므로 중리소활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⁵³⁾ 앞서 지적했듯이 당시 고구려 관제 운영은 형제 관등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계선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관직의 설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나-2. 그 武官은 大模達이라 하는데 衛將軍에 比하며, 일명 莫何邏繡支, 大幢主라고도 하는데, 皂衣頭大兄 이상으로 삼는다. 다음은 末若으로 中郎將에 비하며, 일명 郡頭라고도 하는데, 大兄 이상으로 삼는다. [말약은] 千人을 거느린다. 이하에 각각 등급이 있다.⁵⁴⁾

보이는 바와 같이, 『한원』 고려키에는 위두대형-대형을 기준으로 하

관과 관련된 명칭으로서 그러한 어미가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짐작한다.

52) 이문기, 「高句麗 中裏制의 構造와 그 變化」, 2003, 21~24쪽.

53) 이문기, 「高句麗 中裏制의 構造와 그 變化」, 2003, 24쪽.

54) 『한원』 번이부, 고려, “其武官曰大模達, 比衛將軍, 一名莫何邏繡支, 一名大幢主, 以皂衣頭大兄以上爲之. 次末若, 比中郎將, 一名郡頭, 以大兄以上爲之, 其領千人. 以下各有等級.”

는 무관조직이 있었음을 전한다. 이에 의하면 무관직도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위두대형-대형이라는 형제 관등을 기준으로 임명자격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소개된 대모달과 말약의 관등은 중군주활, 중리대활과 대응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직명은 없지만 대형 이하에도 무관직이 있었음을 전하는 기술이 있다. 말약이 거느렸다는 천 명은 최소 부대단위로 삼기에는 지나치게 많으므로, 하위무관이 있었다면 소형급을 기준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점들을 단서로 삼을 수 있다.

먼저 나-2의 기사에서 말약의 이칭은 郡頭라 하여 지방의 郡에 상당하는 무관직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당시 고구려에 郡이 있었는지는 논쟁이 되고 있지만,⁵⁵⁾ 당시 지방행정조직상 郡의 예하인 縣급 단위 지방관으로서 縣수에 比하는 婁肖는 설치되어 있었다.⁵⁶⁾ 다만 말약이 郡級 정도 규모의 군사를 관장하는 무관이었다면, 군보다 하위인 縣級 정도 규모의 군사를 관장할 무관 역시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군사제도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대형급인 말약의 하위무관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거느리는 병력 규모의 측면이다. 대형이 임명되는 중간 단위인 말약이 천 명 정도를 거느렸다고 했으므로, 소형이 임명되는 무관은 그보다 작은 병력을 거느렸을 것이다. 관련하여 평양성 석각 자료가 주목된다.

- ① 小兒 相夫 若牟利 / ② 物苟 小兒 俳湏 百頭 / ③ 內部 百頭 上位使 尒丈
 ④ 漢城 下後部 小兒 文達 / ⑤ 卦婁盖切 小兒 加群

55) 6세기 이후 고구려 州, 郡, 縣에 대한 논의는 정호섭, 「고구려의 州·郡·縣에 대한 재검토」, 『사학연구』 133, 2019을 참조.

56) 『한원』, 변이부, 고려, “又其諸大城置傳蔭, 比都督, 諸城置處閭匹刺史, 亦謂之道使, 道使治所名之曰備. 諸小城置可邏達, 比長史. 又城置婁肖, 比縣令.”

현전하는 다섯 개의 석각에는 책임자의 소속, 직함과 인명이 기록되어 있다. 표기방식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지만 다섯명의 관등은 小兄, 上位使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상위사는 상위사자를 가리키는데, 『한원』에 의하면 상위사자는 소형 바로 위이고 대형보다는 하위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형제 관등은 관등제를 몇 계층으로 구분하는 기준선이었으므로 소형과 상위사는 같은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②번과 ③번에 보이는 百頭가 주목된다. 명문의 인물들은 소속부, 관등, 인명 등을 새겼는데, 百頭는 말 그대로 百人の 우두머리, 즉 100명을 책임지는 자라는 의미의 직함일 것이다. 그렇다면 상위사자는 100명 정도를 거느릴 지위와 권한이 있었다고 생각되며, 같은 그룹에 묶인 소형도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다.⁵⁷⁾

따라서 이를 무관조직에 대응시키면 1000명을 거느리는 대형급의 무관 예하에 100명을 거느리는 소형급의 무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중군주화와 동격으로서 위두대형으로 삼는 장군은 10000명 단위를 통솔했던 사례가 보이므로,⁵⁸⁾ 고구려의 군사편제는 10진법을 단위로 하여 구성되었다고 추정된다.⁵⁹⁾ 위두대형, 대형, 소형이 10000,

57)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②와 ③에 새겨진 百頭를 小兄 俳湏, 上位使 尙丈과 구별되는 별도의 인물로 보는 한편, 백두는 소형, 상위사를 소지한 감독관의 통제를 받았던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고구려 왕도에 속한 内部 출신 감독관만이 상위사자로서 다른 지역에서 올라온 소형 출신 감독관 보다 지위가 높았던 것이라 보았다(기경량, 『고구려 왕도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8, 166~169쪽). 백두를 관등 소지자가 맡았던 직함이라 보더라도, 그가 100명 단위의 인력을 관리하는 책임자였음에는 큰 차이가 없다.

58)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양원왕본기 7년 9월조, “秋九月, 突厥來圍新城不克, 移攻白巖城. 王遣將軍高紇, 領兵一萬, 拒克之, 殺獲一千餘級.”

59) 단순히 군사편제 뿐만 아니라, 각종 인력동원 자체가 10을 단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광개토왕비 수묘인연호 차출에서 舊民과 新來韓濊의 비율이 1:10이다.

1000, 100의 병력을 각각 거느렸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고구려의 시위무관도 그에 준하여 조직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대형이 임명되는 중리대활 예하에 소형이 임명되는 중리소활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 생각해볼 문제는 중리대활의 상급무관으로서 위두대형이 임명되는 시위무관이 존재했을 것인지의 여부겠다. 위두대형에 임명된 남산은 중군주활이 되었는데, 이는 전시 편제로서 평시의 임무는 아니다.⁶⁰⁾ 특히 남산이 중군주활이 되었던 해에 남생은 막리지로서 삼군대장군이 되었는데(가-2 참조), 이 해에 남생은 남산을 중군의 지휘관으로 두고 압록수에서 당군과 전투를 치렀던 것으로 파악된다.⁶¹⁾

그러므로 남산은 평시에는 별도의 임무를 맡았을 것인데, 그간 남산의 관력을 생각하면 시위업무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아마 위두대형이 된 뒤에도 미상의 시위무관직을 받았으리라 추정되는데, 나-2의 대모달이 唐의 衛將軍에 比한다는 서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때의 위장군이란 左右衛를 비롯한 諸衛將軍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들의 임무는 궁성의 경비에 있었다.⁶²⁾ 따라서 대모달이 위장군과 같은 것으로 서술되었다면 그것은 시위군의 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인데, 대모달의 임명 자격은 위두대형 이상이었다. 따라서 당시 고구려의 시

60) 이문기, 「高句麗 中裏制의 構造와 그 變化」, 2003, 21쪽; 이정빈, 「「천남생묘지」에 보이는 장군과 7세기 고구려의 군사운용」, 2016, 83~88쪽.

61) 이문기, 「高句麗 中裏制의 構造와 그 變化」, 2003, 23쪽의 주53. 관련 사료는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22년 9월, “九月, 蓋蘇文遣其子男生, 以精兵數萬守鴨淥, 諸軍不得渡. 契苾何力至, 值水大合, 何力引衆乘水度水, 鼓噪而進, 我軍潰奔. 何力追數十里, 殺三萬人, 餘衆悉降, 男生僅以身免. 會有詔班師乃還.”

62) 『당육전』 권24, 諸衛府. “左右衛大將軍, 將軍之職, 掌統領宮廷警衛之法令” 이하 다른 제위장군의 임무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위군 편제에서 중리대활의 상급무관이자 통솔자로서 대모달이 상정되며, 남산이 위두대형일 때의 평시 직책 역시 대모달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중군주활은 중리대활과 같은 시위무관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 중군은 전시편제의 중심부대로서, 지휘관이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그의 신변보호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왕이 직접 출전하지는 않았지만, 군사편제상 중군에는 금군에 해당하는 시위군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 때문에 남산의 묘지명에서 대모달 대신 중군주활이 기록된 것은 군사 지휘권의 범위면에서 대모달보다 중군주활이 더 넓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된다.

요컨대 남산은 관직형 중리관에 해당하는 시위무관을 주된 경력으로 하여 승진한 케이스로서, 남생과는 같은 직장의 차이가 있었다. 그는 형과 같은 관등형 중리관을 통해 지위를 상승시키면서, 시위무관으로서 국왕 근시집단에 속해있었다. 다만 남산의 관력에서 관등형 중리관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그의 일생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이 형과 달랐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즉, 묘지명에서는 전반적으로 무관으로서 그의 능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중리대활이나 중군주활 등을 기록하는 방향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남생 형제는 고구려왕에게 근시하면서 한명은 국정운영에, 한명은 국왕시위에 관여하여 고구려 정계의 핵심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남산의 경우도 남생과 마찬가지로 평시에는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근시의 역할을 하였지만 전시에는 행군의 지휘관으로서 바깥에 나아가 전투를 담당하였다. 이 역시 중리를 역임한 자들이 근시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내외를 넘나들며 활동한 사례일 것이다. 이와 같은 두 유형의 중리관은 근시조직의 성격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에 한정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중

리조직 성립의 과정과 배경을 검토하고, 한 두가지 사례에 불과했던 중리관의 활동양상을 비슷한 사례의 확인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후기 중리관제의 성립과정과 운영방식의 특징

1. 6세기 이후 중리관제의 성립배경과 목적

6~7세기 고구려의 중리조직이 이와 같은 구조로 개편되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자들은 누구였는지 궁금해진다. 그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로는 막리지의 상한 연대를 통해 찾아갈 수 있다. 『천남산 묘지명』에서는 고조와 증조가 中裏의 顯位, 즉 막리지를 역임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며,⁶³⁾ 『고질 묘지명』에서는 조부인 式이 2품 막리지를 지냈다고 하였다.⁶⁴⁾ 남산은 701년에 63세로 사망했으므로 638년생이기 때문에 고조는 대략 520년대에는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질은 672년에 사망할 당시 72세였다고 하므로 600년생이 되고, 이에 따라 조부는 늦어도 540년대에는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6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점에는 막리지가 있었던 셈이 되고, 막리지를 위시한 중리관제도 이 즈음에는 성립되어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⁵⁾

63) 『천남산 묘지명』, “乃高乃曾繼中裏之顯位”

64) 『고질 묘지명』, “祖式二品莫離支”. 아들인 『고자 묘지명』에서도 동일한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曾祖式本蕃任二品莫離支”).

65) 구체적으로는 평원왕대가 지목된다(임기환, 「6~7세기 고구려 정치세력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5, 1992, 38쪽.

5세기 무렵의 중리관제로 파악되는 중리도독부 조직에서 관등제와 결합한 6세기 이후의 중리관제로의 변화는 어떤 계기를 통해 이루어졌을까. 앞에서 살펴보았듯 중리관제는 왕실사무를 비롯한 근시조직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왕의 안위와 관련되었을 것이다. 관련하여 저명한 사건을 하나 지목할 수 있다.

다-1. 이 해(544)에 고구려에 大亂이 일어나 誅殺을 당한 자가 많았다(百濟本紀에 이르기를 12월 甲午에 고구려국의 細群과 麤群이 宮門에서 싸웠다. 북을 치고 싸웠는데 세군이 패하였고 [추군은] 3일 동안 병사를 풀지 않고 세군의 자손을 모두 잡아 죽였다. 戊戌에 狍國의 香岡上王이 사망하였다).⁶⁶⁾

다-2. 이 해(545)에 고구려에서 大亂이 일어나 모두 싸우다 죽은 자가 2천여명이었다(百濟本紀에 이르기를 고구려가 정월 丙午에 중부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나이가 8세였다. 狍王은 세 부인이 있는데, 正夫人은 아들이 없고, 中夫人은 세자를 낳았으니 그 장인을 麤群이라 한다. 小夫人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 장인을 細群이라 한다. 狍王의 병이 위독해지자 세군과 추군은 각자 그 부인의 아들을 세우고 싶어 하였다. 이 때문에 세군 사망자가 2천 여인이었다).⁶⁷⁾

66) 『일본서기』 권19, 흠명천황 6년. “是年, 高麗大亂, 被誅殺者衆[百濟本記云, 十二月甲午, 高麗國細群與麤群, 戰于宮門. 伐鼓戰鬥, 細群敗不解兵三日, 盡捕誅細群子孫. 戊戌, 狍國香岡上王薨也.]”

67) 『일본서기』 권19, 흠명천황 7년. “是歲, 高麗大亂, 凡鬪死者二千餘[百濟本記云, 高麗以正月丙午, 立中夫人子爲王, 年八歲. 狍王有三夫人, 正夫人無子, 中夫人生世子, 其舅氏麤群也. 小夫人生子, 其舅氏細群也. 及狍王疾篤, 細群麤群各欲立其夫人之子. 故細群死者, 二千餘人也.]”

위 기록은 544~545년 사이에 일어난 고구려의 왕위계승 분쟁사건을 전한다. 안원왕 말년에 외척인 추군과 세군 간의 무력충돌이 있었고, 그 결과 승자인 추군의 왕자가 양원왕으로 즉위하였다. 여기서 추군과 세군이 유혈사태를 일으킨 宮門이라는 장소를 주목해볼만 하다. 궁문은 왕궁의 문을 가리킬텐데, 왕이 병으로 인해 위독해진 상황임에도 왕의 거처 가까이에서 무력충돌을 벌였던 것이다. 왕의 신변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던 상황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5세기 이래 고구려의 중리조직으로 중리도독부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이 무렵 왕의 안위와 왕궁 인근의 경비를 맡았을 것이다. 더 나아가 역사상 군주의 측근으로서 자주 등장하는 외척이 당시 중리조직의 책임자로서 추군이나 세군에 속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중리도독부의 경우 본래 외래 지방통치조직을 수용하여 평양천도의 사전작업으로서 漢人 유이민들을 흡수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만큼,⁶⁸⁾ 국왕의 근시라는 목적에는 정확하게 부합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즉위한 양원왕과 추군은 도독부의 체제를 벌린 기존의 중리직제의 개편을 추진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시위군 조직을 별도로 설립함으로써 국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한편, 국왕의 일상사무를 비롯한 신변의 보좌를 위하여 각종 근시부서가 설치되었다. 앞서 살핀 두 종류의 근시관은 그러한 개편의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의 개편은 왕의 거처와 정무 장소, 일반 백성이 사는 곳을 공간적으로 분리한 장안성의 축조를 통해 구현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추진된 중리관제의 개편은 인적 구성에 있어서 왕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는 자들을 임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백제와 신라의 경우 왕의 근시업무를 총괄했다고 이해되는 內臣佐平이나

68) 이규호, 「4~5세기 고구려 中裏都督府의 성립과 기능」, 2015.

私臣에 왕의 친족이나 외척을 대부분 임명하였다.

[표 1] 백제, 신라 근시조직 수장 임명 사례

국가	시기	인명	관직	관계
신라	진평왕 7년(585)	화문	대공사신	불명
		수해부	양공사신	
		노지	사랑공사신	
	진평왕 44년(622)	김용수	내성사신	사촌이자 사위
	해공왕 7년(771) 이전	김용	전증령	庶兄 내지 처형
애장왕 2년(861)	김연승	어룡성사신	숙부	
백제	사반왕 27년(260)	우수	내신좌평	동생
	비류왕 18년(321)	우복		이복동생
	비류왕 30년(333)	진의		불명
	근구수왕 2년(376)	진고도		장인
	아신왕 3년(394)	홍		이복동생
	전지왕 3년(407)	여신		이복동생

표의 내용을 고려할 때 고구려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게 개편된 중리 관제의 요직에 정치적 측근들을 임명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대체로 추군 측에 속했던 가문과 세력들이었을 것이다.

중리직 임명자로서 왕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앞서 제시한 고을덕 가문이다. 이들은 묘지명에서 밝히고 있듯이 왕실의 시조인 주몽과의 혈연적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⁶⁹⁾ 그 때문인지 가-3에서 본 것처럼 官을 수여한 주체로서 왕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내외관을 넘나들며 활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왕실의 경제 기반인

69) 『고을덕묘지명』, “朱蒙誕孽, 大治燕土, 正統遼陽, 自天而下, 因命爲姓, 公家氏族, 卽其後也”

牧馬의 임무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왕의 측근세력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특히 고을덕 가문은 동부 소속으로서 연개소문 집권 이후에도 중리관을 받은 것으로 보아, 왕실과의 친연성 뿐 아니라 연개소문 가문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는 高慈 가문을 꼽을 수 있다. 그의 선조 가운데 앞서 언급한 高式이 6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막리지를 역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그들 가문의 관력 가운데 중리직과 관련된 직책은 이뿐이라 보다 구체적인 양상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연씨 형제들의 관력을 고려하면 그 역시 어느 계통인가의 중리관을 통해서 막리지에 오를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막리지가 개편된 중리관제에서 최고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시 고자 가문의 정치적 위상은 비슷한 시기에 막리지를 지냈을 연씨 가문에 못지 않았을 것이다. 시기와 지위를 고려하면 6세기 중엽 당시 추군축에 속한 가문이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고씨 가문과 왕실의 관계와 관련하여 비록 설화적인 내용이지만 아래의 내용도 참고된다.

다-3. [왕의] 딸이 16세가 되자, [왕은 그녀를] 上部 高氏에게 시집보내려고 하였다.⁷⁰⁾

이 내용은 온달전의 일부로서 평원왕이 16세가 된 공주를 상부 고씨에게 시집 보내려고 했음을 전한다. 상부는 동부의 이칭이었으므로, 상부 고씨는 결국 동부 고씨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동부 출신의 고씨로서 고을덕 가문이 상기된다. 또한 고자 가문도 그들의 출신을 요동 조선인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근거지가 평양이 아니었을까 추측되는데, 그

70) 『삼국사기』 권15, 열전5, 온달전. “及女年二八, 欲下嫁於上部高氏.”

렇다면 비록 출신부를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이 상부 고씨에 해당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 내용은 설화적인 내용일 뿐더러 두 고씨 가문과 다-3의 고씨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다만 왕실의 혼인 대상으로서 전하는 상부 고씨와 현전하는 묘지명 자료의 동부 고씨의 위상에 일정한 대응이 있지 않을까 정도를 짐작해둔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연개소문의 가문이겠다. 현전하는 연씨 가문의 세 묘지명인 『천남생묘지명』, 『천남산묘지명』, 『천현성묘지명』을 종합해보면 이들 가문은 선조가 6세기 중엽 무렵부터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증리관을 통해 조정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증리관의 유지 여부가 왕실과의 관계를 반영한다면, 연씨가 고구려 후기 왕실에 가장 최측근이었던 가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왕실과 연씨 가문의 정치적 관계는 굉장히 밀착하게 되었겠지만, 연씨 가문과 왕실의 관계는 좀 특별했던 것 같다.

다-4. [문무왕 10년(670)] 6월에 고구려 水臨城 사람인 大兄 牟岑이 남은 백성들을 모아서 窮牟城으로부터 溟江 남쪽에 이르러 당나라 관리와 승려 法安 등을 죽이고 신라로 향하였다. 서해 史治島에 이르러서 고구려 大臣 淵淨土의 아들인 安勝을 보고 漢城 안으로 맞아들여 받아들여 임금으로 삼았다.⁷¹⁾

다-5. [충장] 2년(669) 己巳 2월에 왕의 庶子 安勝이 4천여 호를 거느리고 신라에 투항하였다…咸亨 원년 경오(670) 여름 4월에 이르러 劔牟岑이 국가를 부흥하려고 하여 唐을 배반하고 왕의 외손 安舜을 세워 임금으

71)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6, 문무왕 10년 6월, “六月, 高句麗水臨城人牟岑大兄, 收合殘民, 自窮牟城至溟江南, 殺唐官人及僧法安等, 向新羅行. 至西海史治島, 見高句麗大臣淵淨土之子安勝, 迎致漢城中, 奉以爲君.”

로 삼았다.⁷²⁾

다-6. 總章 2년(669)…高麗의 大長 鉏牟岑이 무리를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켜 [高]藏의 外孫 安舜을 세워 王으로 삼았다.⁷³⁾

위의 세 사료는 고구려 멸망 후 검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여 부흥운동을 펼쳤던 사례로 자주 이용되는 기사이다. 그런데 이 기사들에서 안승의 혈연관계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신라 계통의 사료에서는 안승이 연정토의 아들로 나오고 있는데 반해, 중국 계통의 사료에는 보장왕의 외손 내지 서자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고구려 멸망을 위해 수많은 공을 들인 당의 입장에서 부흥세력 지도자의 출신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점은 의문스럽다.

비록 고구려는 멸망한 이후지만, 계루부 왕실이 성립한 이래 왕의 혈통은 변하지 않았다. 또한 왕을 시해하는 정변을 일으킨 연개소문조차도 스스로 왕이 되지는 못할 정도로 고구려왕의 혈통적 위상은 확고했다. 따라서 부흥운동의 구심점을 잡기 위해서는 왕족의 혈통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다. 이것은 백제의 부흥운동 세력이 일본에서 왕자 부여풍을 데려온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연정토의 아들이라는 출자만으로는 고구려 유민들의 충분한 구심점이 되기에는 혈통적 명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고구려는 연씨의 배신으로 인하여 멸망했다. 출자에 대한 와전 가능성

72)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下, 咸亨 원년, “二年己巳, 二月, 王之庶子安勝, 率四千餘戶, 投新羅…至咸亨元年庚午歲夏四月, 劔牟岑欲興復國家, 叛唐立王外孫安舜爲主.”

73) 『신당서』 권220, 열전 145, 高麗, “總章二年…大長鉏牟岑率衆反, 立藏外孫安舜爲王.”

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보를 전하는 자료의 계통이 고구려 유민들의 동향에 민감했던 신라와 당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두 가지 다 사실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에 부합하려면 연정토와 보장왕 사이에 혼인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가능한 계보가 만들어진다.

만약 고구려 왕실과 연씨 가문의 혼인이 있었다면 이것은 비단 보장왕과 연정토에만 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연씨 가문은 6세기 중반부터 두각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들은 대대로 증리관을 통해 정계에 나아갔다. 더욱이 백제나 신라처럼 근시조직의 수장을 왕과 혈연적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막리지 역임 사례가 가장 많은 연씨 가문은 이 부분에서 관련이 깊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 주목되는 것은 다음의 내용이다.

다-7. 蓋蘇文이라는 者が 있는데, 혹은 蓋金이라고도 한다. 姓은 泉氏이며, 자신이 물 속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사람을 현혹시켰다.⁷⁴⁾

위의 기록은 당에서 연개소문의 인물됨에 대해 전하는 내용으로서, 연개소문 자신이 물 속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고 한다. 연개소문의 정변이 당의 고구려 침공에 명분을 주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그의 성이 淵씨임을 생각하면 이러한 정보는 단순히 연개소문이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급조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그의 생시보다 더 이른 시기에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안승의 출자가 왕실과 이어질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전승은 왕실과 접점을 가졌기 때문에

74) 『신당서』 권220, 열전 145, 高麗, “有蓋蘇文者, 或號蓋金, 姓泉氏, 自云生水中以惑衆. 性忍暴.”

생겼을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 고구려의 왕실의 시조인 추모왕은 천제의 아들이자 하백의 외손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하백은 강의 신으로서 물의 권능을 지니고 있었고, 이는 주몽이 남하하는 과정에서도 발현되었다. 주몽을 시조로 하는 고구려 왕실은 부계로 하늘과, 모계로 물과 연결되어 있는 신성한 혈통의 후예였다.

안승의 출자가 고구려 왕실과 연씨 가문의 혼인 가능성을 짐작하게 해 주고, 그 연원이 급조되지 않았다면 다-7에서 전하는 연개소문의 수증 탄생 전승 또한 막연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도 연씨 가문의 수증 탄생 전승은 왕의 모계로서 왕실과 결혼하는 최상위 귀족가문이었음을 암시한다고 생각된다. 이들은 물과의 관련성을 드러냄으로서 왕실 모계의 신성성에 기대 자신들의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고자 했다고 추정된다.⁷⁵⁾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6세기 중엽 이후 양원왕으로 시작되는 고구려 왕실과 그의 즉위를 도운 추군 세력은 왕위계승분쟁과 같은 사건을 방지하고, 국왕의 권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중리제의 개편을 시도했다고 생각된다. 장안성 축조를 계획하여 왕의 사적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그를 지킬 전문적인 시위군의 창설이나 왕실사무 전문부서의 설치 등을 통해 독자의 인적집단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중리조직의 개편은 왕권의 안전과 영향력 확대라는 의도가 강하게 개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위 5관이 국정을 주도했다는 『한원』의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당시 중리관제의 수장이었던 막리지가 중서령, 병부상서, 이부상서에 비견되고 있었던 점을 보면, 중리관제는 근시조직으로서 그와 관련된 업무에만 치

75) 오진석, 「연개소문 가문의 소속부와 출신지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36, 2021, 170~171쪽에서는 연씨가문과 왕실과의 혼인을 인정하면서 그를 바탕으로 연씨가문이 시조전승을 변개했다고 보았다.

중했던 것 같지 않다. 오히려 군주에게 오가는 문서의 관리 내지 병력, 관리의 임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다고 보면, 당시 고구려의 관제구조 및 운영에 있어서 증리관제가 기능했던 부분이 예상 외로 컸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타국의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논의의 보강을 시도해보겠다.

2. 관리등용문으로서의 증리관제 운영

앞에서 살핀 고구려 증리관제 운영상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관인으로서의 지위는 형제 관등과 결합한 관등형 증리관을 통해 승진경로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직무는 왕실사무관사에 종사하거나 관직형 증리관(시위군)에 임함으로서 구별했다. 또한 이들은 근시와 관련된 일에 한정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중앙과 지방의 외관에 임명되기도 하는 등, 보다 전방위적인 활동상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 시기 증리관제의 운영은 사실상 그를 통하여 관인의 선발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의 官路로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보았던 남생이 父任, 즉 任子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발탁되었다는 사실이 먼저 주목된다. 과거시험을 통한 관리의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던 사회에서는 별도의 방식을 통하여 관리를 등용하였다. 漢代의 察擧나 위진남북조 시대의 구품중정제는 그 대표적인 예시로서 관리의 추천에 의해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선발된 귀족자제들은 관직에 나아감에 있어 바로 현직에 임명되지 않고, 군주에 근시하면서 예비관료군 과정을 거친 다음 현직에 나아갔다. 대표적으로 漢代의 郎官제도가 그러하였다.⁷⁶⁾ 낭관은 귀족

76) 『한서』 권19상, 百官公卿表 上, 郎中令조에서는 漢代 낭관의 구성과 직무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그들의 주된 임무는 議論, 宿衛 등이었다. 앞서 남생이 증리소형 일 당시 비견된 謁者도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

이나 부호의 자제들이 陰任을 통해 선발되는 것이었고,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낭관제도의 발달은 황제의 사적인 권력이 공적인 관료제도에 침투하는 과정으로도 이해될 뿐 아니라, 군현의 확대에 따라 관료 예비자로서의 수습을 끝내고 국가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해주었다.⁷⁷⁾

이러한 방식을 통해 군주는 귀족들의 신뢰도와 충성심을 제고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군주와 귀족이 결합하여 특수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⁷⁸⁾ 이것은 한족왕조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었는데, 북위의 경우 근시관의 선발에 대하여 諸部大人과 豪族·良家の 자제⁷⁹⁾ 혹은 八國의 良家와 代郡·上谷·廣寧·雁門 4군의 백성 가운데 나이가 많고 재지가 출중한 자⁸⁰⁾를 대상으로 삼았다고 전한다. 이들 상당수는 유력 부족의 수령이나 한인 호족의 자제였다는 점으로 보아,⁸¹⁾ 일정한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자들의 자제들에 한하여 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漢, 北魏의 존속 기간에 공존했던 고구려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관리 선발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⁸²⁾ 남생이 父任에 의하여 官에 나아가기 시작한 것은 연개소문의 권력에 의한 것이기 전에 당시 고구려에서 활용되던 보편적인 인재 등용절차일 수 있는 것

77) 민후기, 「郎官의 屬官化를 통해 본 漢代 관료제도의 발달」, 『역사와실학』 36, 2008, 196~204쪽.

78) 이동훈, 『고구려 중·후기 지배체제 연구』, 서경문화사, 2019, 57쪽.

79) 『위서』 권113, 官氏志. “建國二年, 置左右近侍之職, 常員, 或至百數, 侍直禁中, 傳宣詔命. 皆取諸部大人及豪族良家子弟儀貌端嚴, 機辯才幹者應選.”

80) 『위서』 권113, 官氏志. “[天賜]四年五月, 增置侍官, 侍直左右, 出內詔命, 取八國良家, 代郡, 上谷, 廣寧, 雁門四郡民中年長有器望者充之.”

81) 최진열, 『북위황제 순행과 호한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247쪽.

82) 천거를 통한 관리의 등용은 일찍부터 확인되는데(『삼국사기』 권15, 태조왕 66년 8월. “八月, 命所司舉賢良·孝順. 問鰥寡孤獨及老不能自存者, 給衣食”), 현량·효순한 자를 천거하라는 것은 漢代에 孝廉 등으로 관리를 선발했던 것과 유사하다.

이다. 남생이 선인에 임명되었고, 그것이 郎과 같은 것으로서 기록되었음은 고구려에서도 漢代와 마찬가지로 예비관료군 집단이 근시를 거쳐 각종 관부에 나아갔음을 시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유사한 방식의 인사 운영을 한 국가라면, 부족한 부분을 그들의 실례를 통해 살핌으로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북위의 사례를 주목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 6세기 중후반에 고구려 중리관제가 개편되었다면, 그 무렵 분열되긴 했지만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북위가 주된 참고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종족적으로 구별되는 소수의 지배자집단이 국내의 다양한 복속집단을 통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도 통하는 바가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근래 진행된 북위의 근시관 관련 연구에 의하면, 「文成帝南巡碑」에 보이는 근시관들은 일반 근시관과 숙위장령 및 무사라는 두 계통으로 구분된다.⁸³⁾ 전자는 內(行)이 관칭된 것으로서 內阿干, 內行內小 등이 있고, 후자는 幢將을 관칭한 것으로 三郎幢將, 內都幢將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상하조직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후자는 무관직으로 이해되어 군주의 호위라는 구체적인 직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 비해, 전자는 구체적인 직무 없이 內阿干 등만을 소지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83) 관련연구로는 川本芳昭, 「內朝制度」, 『魏晉南北朝時代の民族問題』, 汲古書院, 1998; 「北魏內朝再論」, 『東アジア古代における諸民族と國家』, 汲古書院, 2015; 張慶捷·郭春梅, 「北魏文成帝《南巡碑》所見拓跋職官初探」, 『中國史研究』 1999-2, 1999; 松下憲一, 「北魏石刻史料に見える內朝官」, 『北魏胡族体制論』, 北海島大學出版會, 2007; 최진열, 「북위전기 근시관의 성격」, 『역사문화연구』 28, 2007; 『북위황제 순행과 호한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박한제, 『중국중세 호한체제의 사회적 전개』, 일조각, 2019.

이 가운데 전자는 대체로 황제의 근시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맡았다고 본다. 그런데 이 가운데 특정 직임을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內阿干에는 庫部內阿干이나 宰官內阿干 등의 종류가 있는데, 해당 관부의 장관으로서 근시관 가운데 특정관부를 담당했던 것을 의미한다.⁸⁴⁾ 관등형 중리관을 소지하고 각종 왕실 사무를 담당했던 고구려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근시관의 취임 연령도 주목되는 점이 있다. 북위에서 내아간의 하위관으로 파악하는 內行內小의 경우 대체로 7~16세 사이의 인물들이 임명되었는데, 주로 초임관으로서 황제의 시종, 비서 등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⁸⁵⁾ 이는 남생 형제가 중리소형에 임명되었을 당시 15세였던 점과 통하는 면이 있다. 초임관으로서 예비관료군인 선인을 시작으로 연령에 따라 승진하였던 중리관의 양상이 비교된다.

이들 근시관은 內, 內行 등을 관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中裏를 관칭하고 있던 고구려와 의미가 통한다. 즉, 이들 역시 군주에게 근시하면서 각종 궁중사무에 종사하는 한편, 시위군으로서 황제의 호위도 담당하는 두 계통이 존재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성제남순비」의 가장 앞 부분에 새겨진 인물들은 가장 높은 품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근시관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데, 비문에서는 그들 역시 內侍官이라 하고 있다. 이들은 당시 북위의 황제였던 문성제의 최측근으로서, 外朝의 고관이었던더라도 內朝의 업무에 관여했던 상황을 반영한다고 파악된다.⁸⁶⁾ 이 역시 태대사자나 대로 등 중리관이 아니었음에도 왕실사무를 담당했던 고을덕 가문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4) 최진열, 『북위황제 순행과 호한사회』, 2011, 273쪽; 박한제, 『중국중세 호한체제의 사회적 전개』, 2019, 336~337쪽.

85) 張慶捷·郭春梅, 「北魏文成帝《南巡碑》所見拓跋職官初探」, 1999, 34쪽.

86) 최진열, 『북위황제 순행과 호한사회』, 2011, 253~255쪽.

이상과 같은 사례들은 6세기 이후 고구려 중리관제의 개편배경과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왕위계승분쟁을 통해 왕위에 오른 고구려왕과 그를 지지하는 귀족가문은 근시관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확보하려고 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관직에 나아갔던 귀족 자제 가운데 국왕의 측근 인사들은 내조 업무에 그치지 않고, 외조 업무에도 나아가 관여함으로써, 여타 귀족들과는 차별되는 지위를 차지하였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막리지의 권한이 현전하는 바대로라면, 당시 중리관은 왕명출납, 시위군을 포함한 병력동원, 관리의 인사까지 담당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조직의 수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왕위계승과정에서 심각한 출혈이 있었던 양원왕과 추군축에 의해 의도된 결과로 보이며, 연개소문이 쿠데타 이후 막리지가 된 것 역시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 생각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함으로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6~7세기 고구려 중리관제는 두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관등형 중리관으로서 당시 고구려 관제 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던 형제 관등에 결합하여 관등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별도의 승진체계를 갖추었다. 중리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관등형 중리관은 근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는데, 왕명 출납이나 왕실 재정 관리 등의 역할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는 관직형 중리관으로서, 이들은 시위군을 구성하였다. 이 역시 관등형 중리관의 서열에 맞추어 상하관계를 이룬 무관직이었는데, 위두대형 이하 소형에 이르기까지 총 3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관련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십진법을 단위로 하여 병력을 구성했을 것으로 보

았다.

이와 같은 고구려 중리관제는 6세기 중엽에 일어난 양원왕의 왕위계승 분쟁을 계기로 개편된 것이었다. 기왕의 중리관제였던 중리도독부는 평양 지역의 사전 작업으로서 그 지역에 안치된 漢人 유이민의 통치와 수용을 위한 조직으로서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왕실 사무 및 근시 등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보았다. 때문에 양원왕 등은 장안성 축조를 계획하면서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조직적으로도 근시에 보다 충실한 인적집단을 구상하였고, 그것이 현전하는 중리관제의 설립을 불러왔다고 이해하였다.

다른 사례들과 비교하면, 이 시기 고구려 중리관은 근시조직이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리의 등용을 위한 조직으로서도 기능했다고 보았다. 귀족 자제들은 중리관을 통하여 예비관료군이 되었고, 능력과 상황에 따라 내외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고구려왕은 중리관 출신자를 통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보다 확대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중리관의 수장인 막리지는 왕명출납, 병력동원, 인사 등의 막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았다.

(2022.07.11. 투고 / 2022.08.05. 심사완료 / 2022.08.20. 게재확정)

[Abstract]

The Operation and Personnel Affairs of the Jungli Council in Goguryeo during the 6th to 7th Century

Lee, gyuho

Focusing on the Jungligwan System found in the epitaphs of migrants in Goguryeo, this study is attempted to clarify the structure and operation of the Jungli Council in the 6th and 7th century and understand how it influenced the personnel management regarding government officials in the 6th and 7th century. According to the findings, Goguryeo's Jungligwanje in the 6th and 7th century was operated in two types in terms of organization.

The first type is Gwandeunghyeong Jungligwan which was combined with Hyeonggye Gwandeung that was one of the pillars of Goguryeo's control structure then. It was characterized by Gwandeung that revealed the hierarchy among Jungligwan. As the title, Jungli, says, Gwandeunghyeong Jungligwan's duties were related to Geunsi (serving the king right beside him). Gwandeunghyeong Jungligwan recorded their duties to classify their roles, for instance, the recording of kind's command or financial management for the court. The second type was Gwanjikhyeong Jungligwan who formed the demonstrators. They were, too, military officers having the hierarchy corresponding to the ranking of Gwandeunghyeong Jungligwan, and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total three types including Sohyeong under Widudaehyeong.

Goguryeo's Jungligwan System mentioned above was reorganized in the wake of King Yangwon's succession to the throne disputes in the middle of the 6th century. Junglidodokbu, the former Jungligwan System, was characterized as an organization for the rule and appointment of Hanin migrants who settled down in the region as part of the preliminary work of capital transfer to Pyeongyang. Therefore, there were certain limitations in terms of organizational aspects in managing the court's affairs or Geunsi. Accordingly, while planning the construction of the Janganseong Fortress, King Yangwon and others envisioned groups of people that were separated spatially and more faithful to Geunsi in organizational aspects, and this is thought to be the background of the Jungligwan System that has been known up to now.

Compared to cases in other countries, Goguryeo's Jungligwan in that period did function as an organization not only for Geunsi but for the appointment of officials as well. Through Jungligwan, the sons of the nobles formed the reserve bureaucrat group and engaged in both internal and external affairs according to their capabilities or circumstances. The kings of Goguryeo tried to expand their influence through Jungligwan, which allowed Makliji, the head of Jungligwan, to grasp absolute authority including the recording of king's command, mobilization of troops, or personnel.

□ Keyword

Goguryeo, Jungli Council, Makliji, king's guard, Geunsi

[참고문헌]

- 김철준, 『한국고대사회연구』, 지식산업사, 1975.
- 박한제, 『중국중세 호한체제의 사회적 전개』, 일조각, 2019.
- 여호규,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2014.
- 이동훈, 『고구려 중·후기 지배체제 연구』, 서경문화사, 2019.
- 최진열, 『북위황제 순행과 호한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 葛繼勇, 「신출토 入唐 고구려인 〈高乙德墓誌〉와 고구려 말기의 내정 및 외교」, 『한국고대사연구』 79, 2015.
- 장진원, 「고구려 평양도읍기 王城의 추이와 왕권」, 『한국고대사연구』 101, 2021.
- 기경량, 「고구려 평양 장안성 중성·내성의 성격과 축조의 배경」, 『고구려 발해연구』 64, 2019.
- 김영심, 「遺民墓誌로 본 고구려 백제의 官制」, 『한국고대사연구』 75, 2014.
- 김철준, 「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 『李丙燾博士華甲記念論叢』, 1956.
- 노중국, 「高句麗 律令에 관한 一試論」, 『동방학지』 21, 1979.
- 민후기, 「郎官의 屬官化를 통해 본 漢代 관료제도의 발달」, 『역사와실학』 36, 2008.
- 여호규, 「新發見 〈高乙德墓誌銘〉을 통해 본 高句麗 末期의 中裏制와 中央官制」, 『백제문화』 54, 2016.
- 오진석, 「연개소문 가문의 소속부와 출신지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36, 2021.
- 이규호, 「4~5세기 고구려 中裏都督府의 성립과 기능」, 『고구려발해연구』 53, 2015.
- 이문기, 「高句麗 德興里古墳壁畫의 ‘七寶行事圖’와 墨書銘」, 『역사교육논

집』 25, 1999.

이문기, 「高句麗 莫離支의 官制的 性格과 機能」, 『백산학보』 55, 2000.

이문기, 「高句麗 中裏制의 構造와 그 變化」, 『대구사학』 71, 2003.

이문기, 「한국 고대국가의 內朝연구 序說」, 『안동사학』 9·10, 2005.

이성규, 「중국 고대 황제권의 성격」, 『東亞史上의 王權』, 한울아카데미, 1993.

이성제, 「어느 고구려 무장의 가계와 일대기」, 『중국고중세사연구』 38, 2018.

이성제, 「遺民 墓誌를 통해 본 高句麗의 中裏小兄」, 『중국고중세사연구』 42, 2016.

임기환, 「6~7세기 고구려 정치세력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5, 1992.

정동준, 「高乙德 墓誌銘」, 『목간과문자』 17, 2016.

武田幸男,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1989.

武田幸男,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4, 學生社, 1980.

松下憲一, 『北魏胡族体制論』, 北海島大學出版會, 2007.

川本芳昭, 『魏晉南北朝時代の民族問題』, 汲古書院, 1998.

川本芳昭, 『東アジア古代における制民族と國家』, 汲古書院, 2015.

張慶捷·郭春梅, 「北魏文成帝《南巡碑》所見拓跋職官初探」, 『中國史研究』 1999-2, 1999.

王連龍, 「唐代高麗移民高乙德墓誌及相關問題研究」, 『吉林師範大學學報』 2015-4, 2015.